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0

발의연월일: 2020. 6. 15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김희곤 · 강기윤

권성동 · 임이자 · 서영교

박덕흠 · 송석준 · 김예지

김용판 · 최승재 · 이종배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국내 경제 활성화, 고용 창출 및 생산기반 확충 방안으로 리쇼어링(Reshoring: 해외로 나간 자국기 업의 본국 복귀)정책을 펴고 있음.

우리나라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책 중 조세감면 특례의 경우, 유턴기업이 국내복귀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고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세감면 특례 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.

이에 유턴기업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"을 "2030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4년"을 "5년"으로, "2년"을 "5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4년"을 "5년"으로, "다음 2년"을 "다음 5년"으로 한다.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"을 "2030년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04조의24(해외진출기업의 국 제104조의24(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 ①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 ① -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 2030년-----(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 다.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 에서 같다)에서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(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 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 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(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 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)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

장(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 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)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 세연도(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 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(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 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)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 장(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 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)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

<u>5년</u>
<u>5년</u>
③
<u> </u>

세연도(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(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 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 하는 경우에는 2년) 이내에 끝 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#### ④ ~ ⑥ (생 략)

제118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 ① 제1 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 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 설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

<u>5년</u>
<u>다음</u>
<u>5년</u>
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18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
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 ①
0000-1
<u>2030년</u>

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• 2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
\_\_\_\_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